

# 202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I. 예산개요

### 1. 세입예산

■ 202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23조 3,359억 4천 1백만원) 대비 7.6%(1조 7,835억 7천 2백만원) 증액된 25조 1,195억 1천 3백만원 수준임.

※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 29조 2,651억 5천 7백만원 대비 14.2%(4조 1,456억 4천 4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액(비율)			
	당초	최종		당초	증감액	비율	최종
계	23,335,941	29,265,157	25,119,513	1,783,572	7.6%	△4,145,644	△14.2
지방세수입	23,095,574	23,095,574	24,881,784	1,786,210	7.7%	1,786,210	7.7
세외수입	238,828	296,809	236,218	△2,610	△1.1%	△60,591	△20.4
보조금	1,539	1,539	1,511	△28	△1.8%	△28	△1.8
보전수입등	-	5,871,235	-	-	-	△5,871,235	△100.0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액(비율)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증감액	비율
합 계	23,335,941	29,265,157	25,119,513	1,783,572	7.6%	△4,145,644	△14.2
지방세수입	23,095,574	23,095,574	24,881,784	1,786,210	7.7%	1,786,210	7.7
지방세	23,095,574	23,095,574	24,881,784	1,786,210	7.7%	1,786,210	7.7
보통세	20,708,171	20,708,171	22,519,132	1,810,961	8.7%	1,810,961	8.7
취득세	6,204,612	6,204,612	5,221,862	- 982,750	△15.8%	△ 982,750	△15.8
주민세	616,633	616,633	672,385	55,752	9.0%	55,752	9.0
재산세	3,827,592	3,827,592	4,163,279	335,687	8.8%	335,687	8.8
자동차세	1,216,532	1,216,532	1,052,439	- 164,093	-13.5%	△164,093	△13.5
레저세	29,891	29,891	106,133	76,242	255.1%	76,242	255.1
담배소비세	571,531	571,531	582,205	10,674	1.9%	10,674	1.9
지방소비세	2,189,240	2,189,240	2,786,892	597,652	27.3%	597,652	27.3
지방소득세	6,052,140	6,052,140	7,933,937	1,881,797	31.1%	1,881,797	31.1
목적세	2,177,403	2,177,403	2,148,952	△28,451	△1.3%	△28,451	△1.3
지역자원시설세	309,683	309,683	334,004	24,321	7.9%	24,321	7.9
지방교육세	1,867,720	1,867,720	1,814,948	△52,772	△2.8%	△52,772	△2.8
지난년도수입	210,000	210,000	213,700	3,700	1.8%	3,700	1.8
지난년도수입	210,000	210,000	213,700	3,700	1.8%	3,700	1.8
세외수입	238,828	296,809	236,218	△2,610	△1.1%	△60,591	△20.4
경상적세외수입	68,933	126,914	127,655	58,722	85.2%	741	0.6
재산임대수입	8,483	8,483	9,507	1,024	12.1%	1,024	12.1
공유재산임대료	8,483	8,483	9,507	1,024	12.1%	1,024	12.1
사용료수입	1,194	1,194	-	△1,194	△100%	△1,194	△100.0
기타사용료	1,194	1,194	-	△1,194	△100%	△1,194	△100.0
수수료수입	832	832	895	63	7.6%	63	7.6
증지수입	832	832	895	63	7.6%	63	7.6
이자수입	58,424	116,405	117,253	58,829	100.7%	848	0.7

구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액(비율)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공공예금이자수입	53,997	111,978	111,136	57,139	105.8%	△842	△0.8
기타이자수입	4,427	4,427	6,117	1,690	38.2%	1,690	38.2
<b>임시적세외수입</b>	169,149	169,149	106,757	△62,392	△36.9%	△62,392	△36.9
재산매각수입	52,518	52,518	30,878	△21,640	△41.2%	△21,640	△41.2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2,518	52,518	30,878	△21,640	△41.2%	△21,640	△41.2
기타수입	106,779	106,779	70,729	△36,050	△33.8%	△36,050	△33.8
체납처분수입	16	16	8	△ 8	△50.0%	△8	△50.0
위약금	232	232	222	△ 10	△4.3%	△10	△4.3
그외수입	106,531	106,531	70,499	△36,032	△33.8%	△36,032	△33.8
지난년도수입	9,852	9,852	5,150	△4,702	△47.7%	△4,702	△47.7
지난년도수입	9,852	9,852	5,150	△4,702	△47.7%	△4,702	△47.7
<b>지방행정제세·부과금</b>	746	746	1,806	1,060	142.1%	1,060	142.1
변상금	746	746	1,806	1,060	142.1%	1,060	142.1
변상금	746	746	1,806	1,060	142.1%	1,060	142.1
<b>보조금</b>	1,539	1,539	1,511	△ 28	△1.8%	△28	△1.8
국고보조금등	1,539	1,539	1,511	△ 28	△1.8%	△28	△1.8
국고보조금등	1,539	1,539	1,511	△ 28	△1.8%	△28	△1.8
국고보조금	1,539	1,539	1,511	△ 28	△1.8%	△28	△1.8
<b>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b>	-	5,871,235	-	-	-	△5,871,235	△100.0
<b>보전수입등</b>	-	5,871,235	-	-	-	△5,871,235	△100.0
잉여금	-	5,871,202	-	-	-	△5,871,202	△100.0
순세계잉여금	-	1,681,959	-	-	-	△1,681,959	△100.0
법정잉여금	-	4,189,243	-	-	-	△4,189,243	△100.0
전년도이월금	-	33	-	-	-	△33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33	-	-	-	△33	-100.0

##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3조 4,181억 8천 2백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조 1,960억 2천 9백만원 대비 7.0%(2,221억 5천 3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2022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3조 4,558억 5천 4백만원 대비 1.1%(376억 7천 2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액(비율)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증감액	비율	
총 계	3,196,029	3,455,854	3,418,182	222,153	7.0%	△37,672	△1.1%	
행 정 관 리	소계	853,943	856,583	910,840	56,897	6.7%	54,257	6.3%
	행정운영경비	794,085	794,085	850,895	56,810	7.2%	56,810	7.2%
	재무활동	15,431	15,500	16,443	1,012	6.6%	943	6.1%
	사업비	44,427	46,998	43,502	△925	△2.1%	△3,496	△7.4%
교 부 금	2,342,086	2,599,271	2,507,342	165,256	7.1%	△91,929	△3.5%	

- 2023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2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액(비율)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증감액	비율
합 계	3,196,029	3,455,854	3,418,182	222,153	7.0%	△37,672	△1.1%
재무과	795,288	795,398	851,983	56,695	7.1%	56,585	7.1%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666	1,743	1,550	△116	△7.0%	△193	△11.1%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1,398	1,475	1,283	△115	△8.2%	△192	△13.0%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08	808	591	△217	△26.9%	△217	△26.9%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액(비율)			
	당초	최종		당초		최종	
2021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69	269	276	7	2.6%	7	2.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211	211	173	△38	△18.0%	△ 38	△18.0%
시간선택제 압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110	187	243	133	120.9%	56	29.9%
체계적인 계약제도 운영	268	268	267	△1	△0.4%	△1	△0.4%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7	27	27	-	-	-	-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01	101	91	△10	△9.9%	△ 10	△9.9%
서울계약담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140	140	149	9	6.4%	9	6.4%
재무활동(재무국 재무과)	-	33	-	-	-	△33	△100.0%
보전지출	-	33	-	-	-	△33	△100.0%
국고보조금 반환	-	33	-	-	-	△33	△100.0%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793,622	793,622	850,433	56,811	7.2%	56,811	7.2%
기본경비	1,581	1,581	1,642	61	3.9%	61	3.9%
기본경비	1,581	1,581	1,642	61	3.9%	61	3.9%
인력운영비	792,041	792,041	848,791	56,750	7.2%	56,750	7.2%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92,041	792,041	848,791	56,750	7.2%	56,750	7.2%
<b>재산관리과</b>	27,511	27,544	41,837	14,326	52.1	14,293	51.9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12,034	12,034	25,350	13,316	110.7	13,316	110.7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12,034	12,034	25,350	13,316	110.7	13,316	110.7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10,400	10,400	23,433	13,033	125.3	13,033	125.3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507	1,507	1,782	275	18.2	275	18.2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7	127	135	8	6.3	8	6.3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자산관리과)	47	47	44	△3	△6.4	△3	△6.4
기본경비	47	47	44	△3	△6.4	△3	△6.4
기본경비	47	47	44	△3	△6.4	△3	△6.4
재무활동(재무국 자산관리과)	15,430	15,463	16,443	1,013	6.6	980	6.3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액(비율)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보전지출	15,430	15,463	16,443	1,013	6.6	980	6.3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430	15,463	16,443	1,013	6.6	980	6.3
<b>계약심사과</b>	104	104	96	△ 8	△7.7	△8	△7.7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35	35	28	△7	△20.0	△7	△20.0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	35	35	28	△7	△20.0	△7	△20.0
계약심사 업무추진	35	35	28	△7	△20.0	△7	△20.0
행정운영경비 (재무국 계약심사과)	69	69	68	△1	△1.4	△1	△1.4
기본경비	69	69	68	△1	△1.4	△1	△1.4
기본경비	69	69	68	△1	△1.4	△1	△1.4
<b>세제과</b>	1,871,465	1,965,968	1,998,107	126,642	6.8	32,139	1.6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1,869,580	1,964,080	1,996,174	126,594	6.8	32,094	1.6
자치구교부금(재무국 세제과)	1,866,943	1,959,075	1,993,531	126,588	6.8	34,456	1.8
재정보전금	1,866,943	1,959,075	1,993,531	126,588	6.8	34,456	1.8
출연(재무국 세제과)	2,637	5,005	2,643	6	0.2	△2,362	△47.2
한국지방재연구원 법정출연금	2,637	5,005	2,643	6	0.2	△2,362	△47.2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760	1,760	1,808	48	2.7	48	2.7
납세자 권리보호	198	198	193	△5	△2.5	△5	△2.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9	179	180	1	0.6	1	0.6
마을세무사 운영	19	19	13	△6	△31.6	△6	△31.6
지방세제 개선	1	1	1	-	-	-	-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	1	1	-	-	-	-
세수증대 활동지원	1,561	1,561	1,614	53	3.4	53	3.4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1,546	1,546	1,518	△28	△1.8	△ 28	△1.8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15	15	96	81	540.0	81	540.0
재무활동 (재무국 세제과)	1	4	-	△1	△100.0	△4	△100.0
보전지출(재무국 세제과)	1	4	-	△1	△100.0	△4	△100.0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액(비율)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국고보조금 반환	1	4	-	△1	△100.0	△4	△100.0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124	124	125	1	0.8	1	0.8
기본경비	124	124	125	1	0.8	1	0.8
기본경비	124	124	125	1	0.8	1	0.8
<b>세무과</b>	494,625	659,804	519,621	24,996	5.1	△140,183	△21.2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475,143	640,196	513,811	38,668	8.1	△126,385	△19.7
자차구교부금(재무국 세무과)	475,143	640,196	513,811	38,668	8.1	△126,385	△19.7
시세 징수교부금	475,143	640,196	513,811	38,668	8.1	△126,385	△19.7
시세입 목표달성	19,337	19,463	5,660	△13,677	△70.7	△13,803	△70.9
효율적인 세입관리	1,442	1,568	1,246	△196	△13.6	△322	△20.5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 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69	395	248	△21	△7.8	△147	△37.2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69	869	908	39	4.5	39	4.5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304	304	90	△214	△70.4	△214	△70.4
세수증대 동기부여	2,343	2,343	1,583	△760	△32.4	△760	△32.4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293	293	396	103	35.2	103	35.2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	100	100	-	-	-	-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1,950	1,950	937	△1,013	△51.9	△1,013	△51.9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	-	50	50	-	50	-
지방세 불복 대응 비용	-	-	100	100	-	100	-
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14,611	14,611	1,914	△12,697	△86.9	△12,697	△86.9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21	1,921	1,914	△7	△0.4	△7	△0.4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12,690	12,690	-	△12,690	△100.0	△12,690	△100.0
새취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941	941	917	△24	△2.6	△24	△2.6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41	941	917	△24	△2.6	△24	△2.6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145	145	150	5	3.4	5	3.4
기본경비	145	145	150	5	3.4	5	3.4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액(비율)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기본경비	145	145	150	5	3.4	5	3.4
<b>38세금징수과</b>	7,036	7,036	6,538	△498	△7.1	△498	△7.1
조세정의 실현	6,958	6,958	6,463	△495	△7.1	△495	△7.1
강력한 고액 체납시세 징수	580	580	618	38	6.6	38	6.6
고액 체납시세 징수	580	580	618	38	6.6	38	6.6
체납시세 징수 지원	6,378	6,378	5,845	△533	△8.4	△533	△8.4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9	2,229	2,054	△175	△7.9	△175	△7.9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4,149	4,149	3,791	△358	△8.6	△358	△8.6
행정운영경비 (재무국 38세금징수과)	78	78	75	△3	△3.8	△3	△3.8
기본경비	78	78	75	△3	△3.8	△3	△3.8
기본경비	78	78	75	△3	△3.8	△3	△3.8

## II. 검토 의견

### 1. 2023년도 세입 여건 전망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44조 2,190억원) 대비 6.8%(2조 9,862억원) 증액된 47조 2,052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52조 2,233억원) 대비 9.6%(5조 181억원) 감액된 수준임.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3 예산(안)	2022 예산 (최종)	증 감	비율(%)
계	47,205,227,895	52,223,324,775	△5,018,096,880	△9.6
일 반 회 계	33,524,517,158	37,987,877,678	△4,463,360,520	△11.7
특 별 회 계	13,680,710,737	14,235,447,097	△554,736,360	△3.9

< 서울시 2022년 본예산 대비 2023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예산안(a)	'22년 본예산(b)	증 감	
			금액(c=a-b)	비율(c/a)
계	472,052	442,190	29,862	6.8
지 방 세	248,818	230,956	17,862	7.7
취 득 세	52,219	62,046	△9,827	△15.8
지 방 소 득 세	79,339	60,521	18,818	31.1
지 방 소 비 세	27,869	21,892	5,977	27.3
기 타 시 세	89,391	86,497	2,894	3.3
세 외 수 입	42,208	44,403	△2,195	△4.9
지 방 교 부 세	2,018	2,048	△30	△1.5
국 고 보 조 금	84,293	79,789	4,504	5.6
지 방 채	17,930	17,089	841	4.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785	67,905	8,880	13.1

- 서울특별시 2023년 예산안 47조 2,05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 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며, 자치구 지원(6조 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원) 등 법정외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임.

**<서울특별시 예산 총괄 현황>**

- 총계규모(a) : 47조 2,052억원
  - 2022년 44조 2,190억원 대비 2조 9,862억원(6.8%) 증가
- 중복 계상 부분(b) : 5조 7,145억원
- 순계규모 (a-b) : 41조 4,907억원
  - 2022년 39조 2,061억원 대비 2조 2,846억원(5.8%) 증가
- 법정외무경비 (c) : 12조 7,033억원
- 실집행규모(a-b-c) : 28조 7,874억원
  - 2022년 26조 8,583억원 대비 1조 9,291억원(7.2%) 증가

**< 서울특별시 경제전망 및 재정여건(기획조정실)>**

**□ 대내외 경제전망**

- (세계경제)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완만한 경기회복세** 예상되나,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국제정세 급변 등 **대외 리스크 상존**
  - 기저효과 종료로 '23년에는 '21~'22년 대비 하락한 2.7% 성장 예상

**【 주요국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IMF, 한국은행) 】** (단위 : %)

연 도	세 계	미 국	유로존	일 본	중 국	한 국
'21년	6.1	5.7	5.3	1.6	8.1	4.0
'22년 <sup>e</sup>	3.2	1.6	3.1	1.7	3.2	2.6
'23년 <sup>e</sup>	2.7	1.0	0.5	1.6	4.4	2.1

- 국제정세 급변 지속 시 高물가, 高금리에 의한 低성장 우려

- (국내경제) 2022년 민간소비 반등으로 2.6% 성장 예상, '23년 수출 증가세 둔화로 2.1% 성장과 동시에 고물가 지속 우려
  -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반등 예상되나, 투자는 기준금리 인상 및 건설비 상승 영향으로 부진 예상
  - 환율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로 경상수지 감소 예상되며, 국제유가·곡물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 역시 지속 상승 전망됨
- (서울경제) 2023년 기준 임금 상승으로 지역총소득 확대 예상되나 높은 생활물가로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 전망
  - 대기업 임금 인상(2021년 20대 기업 인상률 15%)으로 서울\* 지역총소득 증가 예상되나, 민간소비는 높은 생활물가로 인하여 증가세 둔화 예상
    - \* 2019년 기준 1,000명 이상 사업체(719개소)의 43.7%(314개소)가 서울 소재(통계청)
  -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약화 등으로 부동산 매매가격 및 거래량은 완만한 하락세 예상

## □ 서울시 재정여건

-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정부의 세제 개편 등 세입 여건 악화 우려
  - 최근 기준금리 인상 및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취득세수 및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수 감소 우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 (2022.7.21. 발표) 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수 감소('23년 △1,066억원)
    - \* (전국)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6조 8천억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조 5천억원 감소 예상
- 재정자립도 하락, 예산 대비 채무비율 상승 등 市 재정건전성 지속 악화로 지방채 발행여력 축소
  - (재정자립도)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매칭시비 부담 확대 등 매년 재정자립도 하락세('18년 80.6 → '21년 77.3, △3.3)

- (채무비율)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방채 적극 발행으로 최근 예산 대비 채무비율 상승 추세('18년 16.1% → '21년 22.6%, 6.5%p)

○ 경기침체 방어 및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위한 재정운영 필요

- 인플레이션 및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구매력 감소, 실물경기 침체, 실업률 급등 동반 우려

○ 경기침체 및 양극화 극복 위한 약자와의 동행, 침수피해 예방 및 노후 인프라 관리 위한 안전투자 확대 필요

- 2021년 기준 순자산 상위 20%의 순자산이 하위 20% 순자산의 126배(2017년 100배)에 달하는 등 자산 양극화 심화 추세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 돌입,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안전분야 재정수요 급증

○ 재무국 세입예산(25조 1,195억원)은 서울특별시 총계예산(47조 2,052억원)의 53.2% 수준이며, 순계예산(41조 4,907억원)의 60.5%를 차지하는 규모임.

- 이 중 지방세수입\* 예산(24조 8,818억원)은 서울특별시 예산(총계)의 52.7%, 순계예산의 60.0% 규모이며, 지방세(9개\*\*) 주요 세목인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비중이 52.9%(13조 1,558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국 세입의 99.1% 차지

\*\*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특별시분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별도)

## 2. 세입예산 검토

○ 202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23조 3,359억 4천 1백만원) 대비 7.6%(1조 7,835억 7천 2백만원) 증액된 25조 1,195억 1천 3백만원 수준임.

※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 29조 2,651억 5천 7백만원 대비 △14.2%(4조 1,456억 4천 4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 2023년도 재무국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액(비율)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23,335,941	29,265,157	25,119,513	1,783,572	7.6	△4,145,644	△14.2
지방세 수입	23,095,574	23,095,574	24,881,784	1,786,210	7.7	1,786,210	7.7
세외수입	2,388,28	296,809	236,218	△2,610	△1.1	△60,591	△20.4
보조금	1,539	1,539	1,511	△28	△1.8	△28	△1.8
보전수입등	-	5,871,235	-	-		△5,871,235	△100.0

- 지방세 수입은 전년 예산(23조 955억 7천 4백만원) 대비 7.7%(1조 7,862억 1천만원) 증액된 24조 8,817억 8천 4백만원, 재무국 세입의 99.1%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세외수입은 전년 당초예산(2,388억 2천 8백만원) 대비 △1.1%(26억 1천만원) 감액된 2,362억 1천 8백만원으로, 재무국 세입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도 최종예산 2,968억 9백만원 대비 △20.4%(605억 9천 1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보조금은 전년 예산(15억 3천 9백만원) 대비 △1.8%(2천 8백만원) 감액된 15억 1천 1백만원임.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 계상 과목이나 편성하고 있지 않음.

※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제1회 및 제2회)을 통한 최종예산은 '보전수입등'에 잉여금 5조 8,712억원과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 3천 3백만원을 편성한바 있음.

## 가. 지방세수입

○ 지방세 수입은 전년 예산(23조 955억 7천 4백만원) 대비 7.7%(1조 7,862억 1천만원) 증액된 24조 8,817억 8천 4백만원 수준이나,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재무국 세입의 99.1%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지방세수입 결산전망액(25조 4,826억원)과 비교할 경우 △2.4% (6,008억원) 감소한 수준임.

※ 2021년 결산액(26조 12억원)과 비교하면 △4.3%(1조 1,194억원) 감소한 수준임.

### 〈 2023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세 목	2023년 추계(A)	2022년		예산액 대비		전망액 대비	
		예산(B)	결산전망 (C)	금액 (A-B)	증감율 (A/B)	금액 (A-C)	증감율 (A/C)
계	248,818	230,956	254,826	17,862	7.7	-6,008	-2.4
취 득 세	52,219	62,046	58,903	-9,827	-15.8	-6,684	-11.3
지 방 소 득 세	79,339	60,522	83,786	18,817	31.1	-4,447	-5.3
재 산 세	41,633	38,276	38,745	3,357	8.8	2,888	7.5
기 타 세 목	75,627	70,112	73,392	5,515	7.9	2,235	3.0

○ 한편, 2022년 결산전망을 보면, 취득세에서는 예산(6조 2,046억원) 대비 △15.8%(9,827억원)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 지방소득세는 예산(6조 522억원) 대비 31.1%(1조 8,817억원)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2022년 지방세 세입예산(23조 956억원) 대비 7.7%(1조 7,862)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여,

- 2022년 지방세수입은 예산(23조 956억원) 대비 10.3%(2조 3,870억원)의 초과세입이 발생(결산전망 25조 4,826억원)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최근 5년간(2017~2021회계) 지방세 세입 결산 결과를 보면, 최근 5년 평균 예산액(18조 899억원) 대비 18.0%(3조 2,646억원) 초과 징수되고 있으며, 연평균 9.4%의 세입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 최근 5년 예산/결산 및 신장률 〉

(단위 : 억원, %)

연 도	연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2023년 예산
예 산 액	180,899	155,554	170,965	182,213	195,524	200,237	230,956	248,818
결산(전망)액	213,545	178,171	191,033	204,581	233,930	260,012	254,826	
전 년 대 비 증 감 액	18,864	12,478	12,862	13,548	29,349	26,082	-5,186	
결 산 율	117.6	114.5	111.7	112.3	119.6	129.9	110.3	
결산신장률	109.4	107.5	107.2	107.1	114.3	111.1	98.0	

- 2022년 지방세수입 결산전망액(25조 4,826억원)은 전년 세입 결산액(26조 12억원) 대비 2.0%(5,1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2013년도 이래로 9년만에 지방세수입의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 연도별 지방수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123,053	119,130	127,356	137,875	141,258	155,554	170,965	182,213	195,524	200,237
결산액	122,441	117,916	132,496	156,244	165,693	178,171	191,033	204,581	233,930	260,012
결산율	99.5	99.0	104.0	113.3	117.3	114.5	111.7	112.3	119.6	129.8
결산액 증감률	-	-3.7	12.4	17.9	6.0	7.5	7.2	7.1	14.3	11.1

- 2023년 예산 또한 2022년 결산전망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 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실정에 있는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이러한 지방세수입의 감소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른 취득세 세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 2023년도 재무국의 지방세 세입여건 분석을 요약하면,
- 국내 경제는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 특히 금리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주요 지방세 세입원인 취득세의 감소 등 지방세 세입 신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을 감안하여 세입을 추계하고 있음.

## 1) 보통세

- 지방세 중 일반회계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는 취득세 등 8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20조 7,081억 7천 1백만원) 대비 8.7%(1조 8,109억 6천 1백만원) 증액된 22조 5,191억 3천 2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예산의 90.5%(전년도 89.7%)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가)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 시 취득자가 납부하는 세입과목으로, 전년 예산(6조 2,046억 1천 2백만원) 대비  $\Delta 15.8\%$ (9,827억 5천만원) 감액된 5조 2,218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21.0%(전년도 26.9%)를 차지하는 수준임.

### 〈 2023년도 취득세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추 계 액 (A)	2022년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 산 (B)	전 망 (C)	금 액 (A-B)	증감률 (A-B/B)	금 액 (A-C)	증감률 (A-C/C)
소 계	5,221,862	6,204,612	5,890,364	-982,750	-15.8	-668,502	-11.3
부 동 산	4,540,750	5,532,589	5,211,222	-991,839	-17.9	-670,472	-12.9
차 량	681,112	672,023	679,142	9,089	1.4	1,970	0.3

※ 2022회계연도 취득세 결산 전망액(5조 2,112억원)은 예산(5조 5,326억원) 대비  $\Delta 5.8\%$ (3,213억 6천 7백만원) 부족 징수될 것으로 전망

- 취득세 중 부동산분은 전년 예산대비  $\Delta 17.9\%$ (9,918억 3천 9백만원) 감액, 차량분은 1.4%(90억 8천 9백만원) 증액된 규모임.

○ 재무국에서는 취득세(부동산)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세입 감소를 전망하고 있음.

###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 (가격 전망) 상승 요인 크지 않으며 향후 심각한 침체를 올 가능성 있음
- (거래량 전망) 향후 1~3년간 거래량 회복은 어려우며 내년(2023년)은 올 상반기 수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 있음(2022.6.28. 지방세 세수추계 자문회의).

- 부동산 유형별(주택, 건물, 토지)로 구분하고, 주택은 다시 매매(일반, 중과세), 신축·분양, 기타로 세분화하여 예상 부과건수에 예상단가와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세입 추계하고 있음.

□ 반영 지표

(예상 부과건수) '22년 예상 부과건수 × '23년 예상 증감률

- (주택) 129,536건 - 129,536건 × △22.30% = 100,700건
- (건물) 60,271건 - 60,271건 × △10.89% = 53,707건
- (토지) 11,248건 - 11,248건 × △8.93% = 10,244건

(예상 단가) '22년 취득세 단가 × '23년 예상 증감률

- (주택) 매매일반 18,320,000원 × 101.28% = 18,550,000원
- (주택) 매매중과세 43,780,000 × 101.28% = 44,340,000원
- (주택) 신축·분양 14,240,000원 × 109.16% = 15,540,000원
- (주택) 기타 14,700,000원 × 108.19% = 15,900,000원
- (건물) 41,730,000 × 102.66% = 42,840,000원
- (토지) 36,690,000 × 105.06% = 38,550,000원

(징수율) 최근 2년 평균 징수율(99.7%)을 반영하여 추계

□ 산출 결과

(단위 : 백만원)

주택 (A)	건물 (B)	토지 (C)	'23년 추계액 (A+B+C)
1,853,123	2,293,906	393,721	4,540,750

- 다만, 부동산 취득세 예산편성액(4조 5,408억원)은,
-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반영된 2022년 결산 전망액(부동산, 5조 2,112억원)의 87.1% 수준이고,
-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률 반영 없이 산출한 최근 5년(22년 결산전망 포함)간 평균 징수액(5조 7,312억원)의 7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 취득세(부동산)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17.9%, 9,918억원) 편성한 것이 재무국의 전통적인 보수적 추계의 답습은 아닌지, 이에 따라 예년과 같이 결산상 초과세입의 발생으로 세입을 이월하는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 취득세(부동산, 차량)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전망	'23년 추계
예 산 액	4,394,623	4,273,788	4,632,967	5,058,937	6,204,612	5,221,862
신 장 륜	-	-2.7	8.4	9.2	22.6	-15.8
징 수 액	5,191,737	5,590,807	7,470,731	8,010,035	5,890,364	
결 산 율	118.1	130.8	161.3	158.3	94.9	

나) 레저세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투표권 발매금액의 10%를 징수하는 세목으로, 전년 예산(298억 9천 1백만원) 대비 255.1%(762억 4천 2백만원) 증액된 1,061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0.4%(전년도 0.1%)를 차지하는 수준임.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레저세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기 재개로 점차 예년 수준 세입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여 2022년 징수전망액에 최근 5년 가장 높은 징수액 신장률을 적용하여 추계한 것임.

□ 반영 지표

( '22년 징수전망액 ) 6월말 누계 징수실적 + 하반기 징수예상액

- 경마 : 33,792백만원 + 38,630백만원 = 72,422백만원
- 경륜 : 10,712백만원 + 10,084백만원 = 20,200백만원
- 경정 : 3,927백만원 + 4,577백만원 = 8,504백만원

(세액 신장률) 최근 5년(최고) 징수액 신장률 반영

- 경마 106.81%, 경륜 101.71%, 경정 107.28%

□ 산출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전망액		세액 신장률	'23년 추계액
경 마	72,422	x	106.81	77,354
경 료	20,200		101.72	20,547
경 정	7,674		107.28	8,232
<b>합 계</b>	<b>100,296</b>			<b>106,133</b>

- 다만, 「경료·경정법」 개정(2021.8.1. 시행)으로 경료·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발매가 허용되어,
- 「지방세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료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신설(제43조제3호)\*한바 있음.

\*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구 분	종 전	개 정
경료 등 온라인 발매분 납세지	<p>&lt;신 설&gt;            ※ 유권해석에 의해 본장에 귀속</p>	<p>본장 소재지(50%),            전국 지자체*(50%) 귀속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p>

- 한편, 레저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이후 극히 저조한 세입 실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코로나19 이전 1,347억원 수준('17년부터 '19년도까지)의 안정적인 세입을 유지해온 세목으로,
  - ※ 코로나19 전 징수액 : '17년 1,409억원, '18년 1,352억원, '19년 1,282억원
- 2023년 1,061억원 세입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온라인 발매 등에 따른 납세지별 세입 안분 체계의 변화에 면밀한 대응을 통한 세수 확보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음.

〈 최근 5년 레저세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전망	'23년 추계
예 산 액	132,083	131,021	124,873	42,702	29,891	106,133
신 장 륜	-	-0.8	-4.7	-65.8	-30.0	255.1
징 수 액	135,150	128,189	22,924	4,439	100,296	
결 산 율	102.3	97.8	18.4	10.4	335.5	

다)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이양에 따른 세입 과목으로, 전년 예산(2조 1,892억 4천만원) 대비 27.3%(5,976억 5천 2백만원) 증액된 2조 7,868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11.2%(전년도 9.5%)를 차지하는 수준임.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지방소비세 세입추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추 계 액 (A)	2022년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 산 (B)	전 망 (C)	금 액 (A-B)	증감률 (A-B/B)	금 액 (A-C)	증감률 (A-C/C)
소 계	2,786,892	2,189,240	2,549,958	597,652	27.3	236,934	9.3
소 비 지 출 ( 5 % )	711,741	611,256	675,548	100,485	16.4	36,193	5.4
취 득 세 보 전 ( 6 % )	930,014	752,477	909,016	177,537	23.6	20,998	2.3
전 환 사 업 ( 1 4 . 3 % )	1,145,137	825,507	965,394	319,630	38.7	179,743	18.6

〈 최근 5년 지방소비세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전망	'23년 추계
예 산 액	1,212,695	1,794,673	2,041,427	1,824,280	2,189,240	2,786,892
신 장 륜	-	48.0	13.7	-10.6	20.0	27.3
징 수 액	1,399,063	1,928,261	1,942,810	2,077,641	2,549,958	
결 산 율	115.4	107.4	95.2	113.9	116.5	

※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최근 5년(2018년~2023년) 연 평균 19.7% 예산  
신장률을 보이고 있음.

- 지방소비세 세입은 부가가치세 예산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하는 세목으로  
2023년 세입 예산의 증가와 세율 인상\*분(23.7% → 25.3%)을 반영하여  
세입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율 추이: ('21) 21.0% → ('22) 23.7% → ('23) 25.3%

[2023년 세목별 예산안: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

세 목	21년 실적	22년 본예산	22년 추경예산	23년 예산안	21년 실적대비		22년 본예산대비		22년 추경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부가가치세	712,046	774,786	793,233	832,035	119,989	14.4	57,249	7.4	38,802	4.9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중)

부가가치세는 83조 2,03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9조 3,233억원 대비 3조 8,802억원 증가(4.9%)한 규모임. 이는 민간소비 증가율(3.2%)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3.0%) 전망, 최근 과세 소비 비중 증가, 2023년 지방소비세율 인상<sup>1)</sup> 등을 반영한 것임.

○ 한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예산(지방소비세 안분 세율 적용 전\*)에 보전분  
종류별 세율과 서울특별시 안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보전분  
세율 종류는 “소비지출 보전분(5%), 취득세 등 보전분(6%), 전환사업 등  
보전분(14.3%) 등 요소별 세율을 합계(25.3%)하여 추계하고 있음.

\*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 예산은 83조 2,035억원으로, 지방소비세 안분 세율  
(74.7%) 적용 전 예산액은 111조 3,835억 3천 4백만원 수준임.

**1. 소비지출 보전분(5%)**

'23년 부가가치세 예산 × 세율(5%p) × 서울시 안분율

**2. 취득세 등 보전분(6%)**

1) 지방소비세율 추이: ('21) 21.0% → ('22) 23.7% → ('23) 25.3%

- ① 취득세 감소분 = ('23년 부가세 예산 × 서울 - 교부세 감소분 - 교육재  
정교부금 감소분 - 교육세 감소분) × 서울시 안분율
- ② 지방교육세 감소분 = 취득세 감소분 × 10% × 서울시 안분율
- ③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 (지방교육세 감소분 + 지방교부세 감소분) ×  
교육특별회계 전출비율

### 3 전환사업 등 보전분(14.3%)

- ① 1단계(10%p) = 1단계 전환사업 보전분(정액) + 잔여분
- ② 2단계(4.3%p) = 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정액) + 잔여분

#### 《적용 지표》

#### 【2023년 부가가치세(국세) 예산】

(단위 : 억원, %)

연 도	2023년(A)	2022년(B) (2차 추경 반영)	증감(A-B)	증감률
금 액	83조 2,035억원	79조 3,233억원	3조 8,802억원	4.9% ↑

'23년 부가세 예산	÷	지방소비세 안분 서울	=	'23년 부가세 예산 (지방소비세 배분전)
83,203,500		74.7%		<b>111,383,534</b>

#### 【서울시 적용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	22년	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소비 지출분 (5%)	12.780	12.996	12.980	12.867	13.646	13.746
취 득 세 보 전 분 (6%)	22.788	23.749	23.390	24.487	26.633	27.198
전 환 사 업 보 전 분 (억 원)	1,549	790	267	267	해당 없음	

○ 한편, 정부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자치  
단체 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기존 11% → 최종 25.3%)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전환사업비로 선공제하기로 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개정(2021.12.7.)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  
하고,

- 이양 사무(자치경찰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비용보전 방식이 전환되면서, 통지액에 비해 감액 교부하는가 하면, 전환 사업 보전금 기준액이 2026년까지만 적용\*되어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등 재정분권에 취지에 반하는 국가 재정운영이 나타나고 있는바,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예규 제188호)」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비례하는 세입 확보를 위한 재무국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목이라고 할 것임.

## 바)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2023년도 소득세 등 국세 세입 여건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6조 521억 4천만원) 대비 31.1%(1조 8,817억 9천 7백만원) 증액된 7조 9,339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31.9%(전년도 26.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임.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지방소비세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추 계 액 (A)	2022년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 산 (B)	전 망 (C)	금 액 (A-B)	증감률 (A-B/B)	금 액 (A-C)	증감률 (A-C/C)
소 계	7,933,937	6,052,140	8,378,593	1,881,797	31.1	-444,656	-5.3
종합소득분	909,933	784,387	1,010,431	125,546	16.0	-100,498	-9.9
양도소득분	740,773	683,755	1,062,259	57,018	8.3	-321,486	-30.3
법인소득분	2,631,051	1,678,164	3,000,626	952,887	56.8	-369,575	-12.3
특별징수분	3,652,180	2,905,834	3,305,277	746,346	25.7	346,903	10.5

○ 본 세목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분 및 법인 소득분과,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매월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특별징수분, 부동산 등의 양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14년까지는 국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국세의 부가 세목이었으나,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세입은 증가 추세에 있음.

※ 종합소득분 소득세 예산 × 지방세 비율 × 서울시 점유비 × 징수율

※ 양도소득분은 소득세 예산 × 지방세 비율 × 서울시 점유비 × 거래량 감소율 × 징수율

※ 법인소득분은 법인세 예산 × 지방세 비율 × 서울시 점유비 × 징수율

※ 특별징수분은 원천세 예산 × 지방세 비율 × 서울시 점유비 × 징수율

[2023년 세목별 예산안: 소득세]

(단위: 억원, %)

세 목	21년 실적	22년 본예산	22년 추경예산	23년 예산안	21년 실적대비		22년 본예산대비		22년 추경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소 득 세	1,141,123	1,058,017	1,278,459	1,318,632	177,509	13.5	260,615	24.6	40,173	3.1
신 고 분	526,974	439,967	557,815	544,452	17,478	3.2	104,485	23.7	△13,363	△2.4
종합소득	159,902	215,587	215,587	247,255	87,353	35.3	31,668	14.7	31,668	14.7
양도소득	367,072	224,380	342,228	297,197	△69,875	△23.5	72,817	32.5	△45,031	△13.2
원 천 분	614,149	618,050	720,644	774,180	160,031	20.7	156,130	25.3	53,536	7.4
이자소득	22,140	26,470	26,470	26,934	4,794	17.8	464	1.8	464	1.8
배당소득	46,490	43,490	43,490	49,745	3,255	6.5	6,255	14.4	6,255	14.4
사업소득	36,727	35,790	35,790	45,490	8,763	19.3	9,700	27.1	9,700	27.1
근로소득	472,312	476,940	579,534	606,216	133,904	22.1	129,276	27.1	26,682	4.6
연금소득	2,812	2,930	2,930	4,903	2,091	42.6	1,973	67.3	1,973	67.3
기타소득	19,359	18,830	18,830	24,577	5,218	21.2	5,747	30.5	5,747	30.5
퇴직소득	14,308	13,600	13,600	16,315	2,007	12.3	2,715	20.0	2,715	20.0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목별 예산안: 법인세]

(단위: 억원, %)

세 목	21년 실적	22년 본예산	22년 추경예산	23년 예산안	21년 실적대비		22년 본예산대비		22년 추경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법 인 세	703,963	749,380	1,040,662	1,049,969	346,006	33.0	300,589	40.1	9,307	0.9
신 고 분	554,679	602,580	876,389	870,700	316,021	36.3	268,120	44.5	△5,689	△0.6
원 천 분	149,284	146,800	164,273	179,269	29,985	16.7	32,469	22.1	14,996	9.1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중)

소득세는 131조 8,63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7조 8,459억원 대비 4조 173억원 증가(3.1%), 2022년 본예산 대비 26조 615억원 증가(24.6%)한 규모임. 이는 임금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소비회복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효과와 자산거래 둔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효과 등을 반영한 것임.

① 종합소득세 세수는 24조 7,255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대비 3조 1,668억원 증가(14.7%)한 규모임. 이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회복 등을 반영한 것임.

② 양도소득세 세수는 29조 7,197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조 5,031억원 감소(△13.2%), 2022년 본예산 대비 7조 2,817억원 증가(32.5%)한 규모임. 이는 2022년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며, 다만 SOC 등 산업적 영향을 받는 토지분이 다소 증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임.

③ 이자소득세 세수는 2조 6,934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대비 464억원 증가(1.8%)한 규모임.

④ 배당소득세 세수는 4조 9,745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대비 6,255억원 증가(14.4%)한 규모임.

⑤ 근로소득세 세수는 60조 6,216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조 6,682억원 증가(4.6%), 2022년 본예산 대비 12조 9,276억원 증가(27.1%)한 규모임. 이는 2022년 상용직 위주의 증가에 따른 고용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임금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다만 EITC CTC 지급액 증가로 증가율은 전년대비 둔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반영한 것임.

⑥ 사업소득세 세수는 4조 5,490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대비 9,700억원(27.1%) 증가한 규모임.

⑦ 연금소득세 세수는 4,903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대비 1,976억원(67.3%) 증가한 규모임.

⑧ 기타소득세 세수는 2조 4,577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대비 5,747억원(30.5%) 증가한 규모임.

⑨ 퇴직소득세 세수는 1조 6,315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대비 2,715억원(20.0%) 증가한 규모임. 이는 2022년 7월 세수실적 증가 및 최근 증가율 추세 등을 반영한 것임.

법인세는 104조 9,969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4조 662억원 대비 9,307억원(0.9%) 증가한 규모임.

① 법인세 신고분 87조 700억원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7조 6,389억원 대비 8조 5,689억원 감소( $\Delta 0.6\%$ )한 규모인데, 이는 22년 상반기 기업실적은 양호하나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 법인소득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22년에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증가('21년 법인실적 반영)의 기저효과도 내년 법인세 신고분이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임.

② 법인세 원천분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조 9,269억원 대비 1조 4,996억원 증가(9.1%)한 규모인데, 이는 이자율 상승 등을 감안한 것임.

○ 재무국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소비회복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증가 및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 등에 따른 법인소득의 둔화 등을 반영한 국세 예산(안)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추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방소비세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추 계 액 (A)	2022년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 산 (B)	전 망 (C)	금 액 (A-B)	증감률 (A-B/B)	금 액 (A-C)	증감률 (A-C/C)
소 계	7,933,937	6,052,140	8,378,593	1,881,797	31.1	-444,656	-5.3
종합소득분	909,933	784,387	1,010,431	125,546	16.0	-100,498	-9.9
양도소득분	740,773	683,755	1,062,259	57,018	8.3	-321,486	-30.3
법인소득분	2,631,051	1,678,164	3,000,626	952,887	56.8	-369,575	-12.3
특별징수분	3,652,180	2,905,834	3,305,277	746,346	25.7	346,903	10.5

-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전년 최종예산 대비 증가율 감소(△13.2%)에도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전년 대비 8.3% 증액 편성한 것은 그만큼 2022년 세수 추계가 적정하지 못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의 증액 편성(8.3%)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동산 등의 거래를 세원으로 하는, 앞서 본 높은 수준의 취득세 감액(△15.8%) 편성은 서로 모순되는 예산편성 형태라고 할 것으로 이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최근 5년간 지방소득세 결산 추이를 보면 평균 초과세입액은 1조 2,890억원에, 평균 결산률이 126.6%에 달하여 과도하게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현행처럼 국세 추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계 모델 개발 등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5년 평균 초과세입 1조 2,890억원, 결산율 126.6%

< 최근 5년 지방소득세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전망	'23년 추계
예 산 액	4,848,309	5,238,562	5,433,080	5,196,430	6,052,140	7,933,937
신 장 륜	-	8.0	3.7	-4.4	16.5	31.1
징 수 액	5,494,275	5,805,876	6,107,644	7,427,345	8,378,593	
결 산 율	113.3	110.8	112.4	142.9	138.4	

-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의 체납규모는 총 체납액의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 징수실적 또한 징수결정액(3,257억원)의 19.8%(643억원)에 그치고 있는 등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체납 징수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국세에 앞서는 조세채권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재무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세목이라고 하겠음.

<2021회계연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세목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취득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방 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징수결정액	6,995	553	866	<b>3,257</b>	1,034	371	357	489	68
(점유율)	100	7.9	12.4	<b>46.6</b>	14.8	5.3	5.1	7.0	0.9
수납액	2,358	243	157	<b>643</b>	621	190	184	292	28
결손액	497	62	69	<b>249</b>	54	17	15	27	4
미수납액	4,140	248	640	<b>2,365</b>	359	164	158	170	36
징수율	33.7	43.9	18.1	<b>19.8</b>	60.0	51.3	51.5	59.7	41.2
결손율	7.1	11.2	8.0	<b>7.6</b>	5.2	4.6	4.2	5.4	5.9
미수납율	59.2	44.9	73.9	<b>72.6</b>	34.6	44.1	44.3	34.9	52.9

## 사) 재산세

○ 서울특별시 세입 재산세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 (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市稅)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재무국 “재정보전금” 사업의 재원으로 전액 사용되는 세입 과목으로,

### 〈재산세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추 계 액 (A)	2022년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 산 (B)	전 망 (C)	금 액 (A-B)	증감률 (A-B/B)	금 액 (A-C)	증감률 (A-C/C)
소 계	4,163,279	3,827,592	3,874,483	335,687	8.8	288,796	7.5
특별시분	1,947,034	1,818,860	1,865,216	128,174	7.0	81,818	4.4
도시지역분	2,216,245	2,008,732	2,009,267	207,513	10.3	206,978	10.3

-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기초로 하여 전년 예산(3조 8,275억 9천 2백만원) 대비 8.8%(3,356억 8천 7백만원) 증액된 4조 1,632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16.7%(전년도 16.6%)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특별시분 재산세는 자치구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07년 신설)

※ ‘특별시분 재산세’는 2023년도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합산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50%)을 적용한 1조 9,470억 3천 4백만원을 편성(전년 예산 대비 7.0%, 1,281억 7천 4백만원 증가)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부가 과세 되는 세목으로, 세입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조 2,162억 4천 5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10.3%, 2,075억 1천 3백만원 증가)

\*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징수액 전액이 도시개발 특별회계(70%), 주택 사업 특별회계(20%), 교통사업특별회계(10%)로 전출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현실화율”) 정책으로,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매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전망	'23년 추계
예 산 액	2,369,431	2,615,116	2,998,999	3,394,557	3,827,592	4,163,279
신 장 률	-	10.4	14.7	13.2	12.8	8.8
징 수 액	2,497,985	2,841,097	3,203,961	3,646,069	3,874,483	
결 산 율	105.4	108.6	106.8	107.4	101.2	

### 아) 자동차세

○ 자동차세 예산은 전년 예산(1조 1,862억 4천 1백만원) 대비 △13.5%(1,640억 9천 3백만원) 감액된 1조 524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4.2%(전년도 5.3%)를 차지하는 세목임.

#### 〈재산세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추계(A)	2022년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산(B)	전망(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소 계	1,052,439	1,216,532	1,064,110	-164,093	-13.5	-11,671	-1.1
소 유 분	642,485	616,400	635,998	26,085	4.2	6,487	1.0
주 행 분	409,954	600,132	428,112	-190,178	-31.7	-18,158	-4.2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의 ‘소유분 자동차세’와 도로·교통관리,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

- 소유분 자동차세는 2022년 부과 전망액(6,359억 9천 8백만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세액신장율 101.02%와 최근 3년 평균 징수율 90.96%를 반영하여 2022년 예산 대비 4.2%(260억 8천 5백만원) 증액된 6,424억 8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주행분 자동차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가보조금 보전분으로 구분\*되며,
- 2023년도 예산은 전년(6,001억원) 대비 △31.7%(1,902억원) 감액된 4,099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자동차세 보전분 = 9,830억원 × 서울시 안분율  
 유가보조금 보전분 = (교통세 예산 × 주행분 세율 - 9,830억원) × 서울시 안분율  
 (서울시 안분율) 자동차세 보전분 14.6801%, 유가보조금 보전분 13.8703%

- 자동차세 주요 감액편성 사유는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의 인하(2022.7.1.부터)와 이를 반영한 2023년 교통세 예산액의 보수적 추계에 따른 것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 1,47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조 9,022억원 대비 2,449억원 증가(2.2%)한 규모로서 유류 수요전망 및 2023년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된 결과임.

〈 최근 5년 자동차세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전망	'23년 추계
예 산 액	1,101,638	1,132,092	1,104,975	1,186,241	1,216,532	1,052,439
신 장 륭	-	2.8	-2.4	7.4	2.6	-13.5
징 수 액	1,275,545	940,104	1,168,621	1,164,093	1,064,110	
결 산 율	115.8	83	105.8	98.1	87.5	

- 한편, 소유분 자동차세 중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은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경우는 정액제(비영업용 승용 10만원)로 운영되고 있음.

**자동차세 세율(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③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이는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자 1991년부터 지방세법\*에 신설된 ‘기타 승용자동차’의 정액 세율을 현행 전기차 등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 시행 1991. 1. 1.,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장 많은 4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자동차”(1600cc초과 2000cc)의 연간 세액은 최대 40만원(1988cc, 399,600원) 수준인바, 차량의 성능이나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정액 세율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승용자동차 배기량별 점유 현황 〉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분	합계	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이상
대수	1,360,146	482	11,381	297,986	544,302	232,217	144,300	129,478
점유비	100.0	0.0	0.8	21.9	40.0	17.1	10.6	9.5

2) 지난년도수입(시세)

○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예산은 전년 예산(2천 1백억원) 대비 0.4%(37억원) 감액된 2,137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예산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지난년도 수입 세입추계 〉

(단위 : 백만원, %)

'23년 추계(A)	2022년		예산대비		전망대비	
	예산(B)	전망(C)	금액(A-B)	비율(A-B/B)	금액(A-C)	비율(A-C/C)
213,700	210,000	214,556	3,700	1.8	-856	-0.4

○ 지난년도수입은 해당 회계연도 출납정리기간 내에 징수되지 못한 세입을 다음연도 이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세입과목으로,

① '23년 체납예상액	×	② 최근 5년 징수율	×	③ 최근 5년 징수 증가율	=	'23년 체납 징수예상액
914,113		22.9%		2.1%		213,700

○ 먼저, 재무국의 지난년도 시세 예산(이하 “징수목표”)액 대비 결산률 추이를 보면, 2020년도는 예산액(2,221억원) 대비 83.2%(1,846억원), 2021년도는 예산액(2,010억원) 대비 117.3%(2,257억원), 2022년도는 예산액(2,100억원) 대비 102.2%(2,146억원)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 예산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전망	'23년 추계
예 산 액	236,597	221,567	222,078	201,005	210,000	213,700
신 장 륜	-	-6.4	0.2	-9.5	4.5	1.8
징 수 액	200,327	226,319	184,629	235,753	214,556	
결 산 율	84.7	102.1	83.1	117.3	102.2	

- 다만, 징수목표(예산액)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2023년 예산(2,137억원)은 전년 징수전망액(2,145억 5천 6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세입 확대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2022년 8월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 체납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체납액 1조 8백억원 중 3천 4백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1.4%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의 경우 체납액 8,092억원의 25.6%인 2천 75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25.6%로 최하위를 보이고 있는바,

〈 2022년 8월말 징수실적 〉

(단위: 억원, %)

시도	부과액 (A)	징수액 (B)	징수율 (B/A)	순위	정리보류액 (시효완성포함) (C)	정리보류율 (C/A)	체납액 (A-B-C)
전국	35,907	11,181	31.1	-	1,683	4.7	23,043
서울	8,092	2,075	25.6	17	197	2.4	5,820

부산	1,830	540	29.5	14	104	5.7	1,186
대구	818	416	50.9	1	17	2.1	385
인천	2,006	691	34.4	7	270	13.5	1,045
광주	595	212	35.6	6	0	0.0	383
대전	665	248	37.3	4	41	6.2	376
울산	652	194	29.8	13	35	5.4	423
세종	233	77	33.0	11	0	0.0	156
경기	10,835	3,400	31.4	12	626	5.8	6,809
강원	811	304	37.5	3	28	3.5	479
충북	935	317	33.9	8	20	2.1	598
충남	1,535	515	33.6	9	60	3.9	960
전북	982	328	33.4	10	59	6.0	595
전남	820	304	37.1	5	40	4.9	476
경북	1,838	522	28.4	15	83	4.5	1,233
경남	2,417	673	27.8	16	101	4.2	1,643
제주	843	365	43.3	2	2	0.2	476

※ 서울시는 자치구 포함이며, 타 시도는 산하 시군구가 포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6쪽

○ 이는 매년 2천억원 내외 수준의 예산액(징수목표) 편성 규모는 체납징수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징수가능한 체납액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는 행정 편의적 예산편성이라고 할 것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목표액) (A)	징수결정액 (총체납액) (B)	수납액 (C)	예산진도율 (예산액 대비 목표달성률) (C/A)	징수율 (총체납액 대비) (C/B)
2022.8월	210,000	762,378	190,549	90.7	25.0
2021년	201,005	699,543	235,753	117.3	33.7
2020년	222,078	834,347	184,629	83.1	22.1
2019년	221,567	1,030,407	226,319	102.1	22.0
2018년	236,600	1,256,009	200,327	84.7	15.9
2017년	233,297	1,328,201	209,404	88.0	15.8

※ 행감자료 954쪽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징수 추이 분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징수결정액(A)	1,256,009	1,030,407	834,347	699,543	778,691
예산(징수목표)액(B)	236,597	221,567	222,078	201,105	210,000
<b>예산편성률(B/A)</b>	<b>18.8</b>	<b>21.5</b>	<b>26.6</b>	<b>28.7</b>	<b>27.0</b>
결산(수납)액(C)	202,843	226,319	184,629	235,753	219,078
<b>결산률(C/B)</b>	<b>85.7</b>	<b>101.9</b>	<b>83.1</b>	<b>117.3</b>	<b>102.2</b>
<b>징수율(C/A)</b>	<b>16.1</b>	<b>22.0</b>	<b>22.1</b>	<b>33.7</b>	<b>28.1</b>
결손액(D)	383,784	314,213	245,339	49,701	60,000
결손률(D/A)	30.6	30.5	29.4	7.1	7.7

## 나. 세외수입

○ 2023년 재무국 세외수입 세입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2,388만 2천 8백만원) 대비 △1.1%(26억 1천만원) 감액된 2,362만 1천 8백만원\*으로, 재무국 일반회계 세입(25조 1,195억 1천 3백만원)의 0.9%(전년도 1.0%)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 최종예산 대비 △20.4%(605억 9천 1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가) 경상적세외수입

#### 1) 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

○ 재무국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에 대한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에 따른 대부료를 계상하는 세입과목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 ▶ 행정재산 : 공용재산(청사사무실 등), 공공용재산(공원, 도로),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b>212 사용료수입</b>	
	212-01 도로사용료	1. 도로점용료수입 2. 도로통행료수입
	212-02 하천사용료	1. 하천점용료수입 2. 하천수사용료수입
	212-03 하수도사용료	1. 하수도점용료수입 2. 하수도사용료수입
	212-04 상수도사용료	1. 상수도요금수입
	212-05 공유수면사용료	1. 공유수면점용료 2. 공유수면사용료
	212-06 시장사용료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	1.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
	212-08 주차요금수입	1. 주차장법 등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212-09 기타사용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 ‘공유재산임대료’는 ‘일반재산 임대료’와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최근 3년 평균 징수액(1,050백만원)에 2022년 지가 상승률(11.54%)에, 감액률을 반영한 지가상승률(6.96%)을 적용하여 전년(96억 7천 8백만원) 대비 1.8%(1억 7천만원) 감액된 95억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재무국 세외수입 예산액의 4.0%).

\* 전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9		2020		2021		2022		2023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14,278,990	4,474,155	16,328,949	9,721,894	14,159,995	11,427,403	9,677,518	10,047,075	9,506,818
결산률: 31.3%		59.5%		80.7%		103.8%		

○ 다만, 2022년 예산 편성까지 재무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기타사용료 (212-09)’과목에 계상해오다가 이를 개선하여 2023년 예산안부터는 본 세입 과목에 일괄 계상하고 있는바, 정확한 세입예산 처리를 통한 예측가능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3년 ‘기타사용료’ 세입예산 편성 내역 없음.

## 2) 공공예금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신한은행)에 공금예금 또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 전년 당초예산(539억 9천 7백만원) 대비 105.8%(571억 3천 9백만원) 증액된 1,111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재무국 세외수입의 47.0%를 차지하는 주요 세외수입 세입과목임.

\* 전년 최종예산(1,119억 7천 8백만원) 대비 0.8% 감액된 수준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5. 시·군·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연도별 공공예금이자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9		2020		2021		2022		2023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39,200,441	49,135,587	35,404,000	20,428,525	13,923,152	43,039,001	111,977,811	111,977,811	111,136,000
결산률: 125.3%		57.7%		309.1%		1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 추이를 보면, 2020년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출 등으로 인한 평균잔액 감소와, 정기예금 기준금리의 하락에 따라 정기예금 예치율(31.5%)이 전망수준(90%) 보다 현저히 낮아진 이유로 결산률이 57.7%(204/354억원)에 그친바 있고,
  - 2021년도는 이월자금이 전년대비 1조 598억원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액 인상에 따른 지방세 초과세입 발생으로 평잔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309.1%의 높은 결산률을 보인바 있음.
  - 2022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제2회)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을 당초예산(539억 9천 7백만원) 대비 107.4%(578억 8천 1백만원)을 증액한 1,119억 7천 8백 만원을 편성한바 있고, 전액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공공예금이자수입 추가경정 예산(2022년 제2회)>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	징수액(5월)	추경예산	증감
53,997	62,177	111,978	57,981 (107.4%)

-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국은 최근 3년('20~'22년) 시금고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정책등의 요인으로 세입전망이 유동적임을 감안하여, 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중장기 예치 보다는 단기성 예금 점유율을 높게 반영하여 전년 최종예산 수준의 예산액(1,111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2년 하반기 공금예금 이자 수입은 연 2회 발생(7월, 익년 1월), 정기예금은 매달 발생(공금예금 이자 56억원 + 23년 정기예금 이자 1,055억원)

◆ 2023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3년 추계액 : 111,136,000천원
- 산출내역 : '22년 회계 이자(5,601백만원) 및 '23년 회계 이자(105,535백만원)
  - 최근3년('20~'22년) 평잔액 평균을 '23년 평잔액으로 반영
  - 부동산 정책등의 요인으로 세입전망이 유동적이며, 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중장기 예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단기성 예금 점유율을 높게 반영하여 산출함
  - '23년부터 적용되는 신규약정 금리 산정 기준에 따라 '22.9월기준 COFIX에 가산금리 반영

▶ '22년 회계 이자수입 5,601백만원 = '22년 7~12월 일반회계 공금예금 평잔 추계액

$$*7,370,670\text{백만원} \times **10\% \times 1.52\% \div 2$$

\*7,370,670백만원 추계방법 : 최근 5년간('17~'21) 상하반기 평잔 변동률 평균(142.5%)을 '22년 상반기 평잔에 적용하여 추계

\*\*'22년 하반기 공금예금 예치율 전망치(10%) 반영

※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반기별(1.7월) 정산하므로 22년 하반기 공금예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23년 1월에 지급됨

▶ '23년 회계 이자수입 105,5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기 간		평균잔액 규모(전망치)	점유비 (%)	이율 (%)	이자수입액	
계		4,209,600	100		105,535	
정기 예금	12개월	3,367,680	-	3.84	-	
	6개월		-	3.46	-	
	3개월		420,960	10	3.09	13,008
	1개월		2,946,720	70	2.78	81,919
공금예금		841,920	20	2.52	10,608*	

\*하반기 공금예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익년도 1월에 발생하므로 1/2만 반영

【 참고자료 - 연도별 일반회계 평잔 및 이자수입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망
평 잔 액	24,097	28,278	26,232	20,314	43,164	62,811
이 자 액	497	555	491	204	430	1,120

- 다만, 재무국은 세입전망이 유동적이라는 사유로 평균잔액 전망치(4조 2,096억원)의 70%(2조 9,467억원)를 1개월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바, 지나치게 단기성 정기예금 예치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와 함께,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휴자금 운영에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정기예금 종류(1개월, 3개월, 6개월, 1년), COFIX금리(기준)+가산금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용)

-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나) 임시적세외수입

### 1) 공유재산매각수입금(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 재무국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시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전년 (525억 1천 8백만원) 대비 △41.2%(216억 4천만원) 감액된 308억 7천 8백만원으로 재무국 세외수입의 13.1%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부과권자: 위임재산관리관(자치구), 일반재산 수탁관리자(서울주택도시공사)

※ 수입금의 귀속

- 자치구 위임 : 구 20~30%, 시 70~80%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 서울주택도시공사 1.7~2.0%, 시 98~98.3%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 < 연도별 공유재산매각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 (단위 : 천원)

2019		2020		2021		2022		2023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472,985,620	29,974,839	57,956,955	30,109,971	106,511,747	15,317,705	52,518,245	49,009,339	30,878,001
결산율: 6.3%		52.0%		14.4%		93.3%		

#### < 연도별 공유재산매각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전망)
부 과 액	110,817,662	31,941,387	38,010,405	15,352,110	52,518,245
징 수 액	109,977,946	29,974,839	30,109,970	15,317,705	49,009,339
일반징수	48,761,024	26,198,433	25,942,507	15,317,705	11,488,020
특별징수	32,407,922 (고덕강일주택지구등 손실보상) 28,809,000 (원지동국립의료원)	1,635,293 (고덕강일주택지구등 손실보상) 2,141,113 (원지동국립의료원)	4,167,463 (고덕강일주택지구등 손실보상)		23,213,978 종로 공평지구 14,307,341 개포 도심개발사업
징수율(%)	99.2%	93.8%	79.2%	99.7%	92.67%

※ 출처: 세입사업설명서 중

- 한편, 2021년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예산액(1,065억원) 대비 14.4%(153억원) 징수되었으나, 부과액(154억 3천 5백만원) 대비 99.7%(153억 1천 8백만원)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렇듯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그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 징수 결정(부과) 조차 하지 않은 세입결손액 911억원에 달하는 것은, 그만큼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을 수반하게 되어,
- 사업 추진의 차질을 초래하게 되고, 재정 수지균형을 크게 위협하여 서울특별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것으로,
- 과다한 세입 없는 세입예산 편성 및 결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재무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1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1년 추계액 : 106,511,747천원
- 산출내역
  - 일반징수 : 41,281,467천원
    - 38,135,304천원('17년도~'19년도 징수평균액)×108.25%('20년도 지가상승률)
  - 특별징수 : 65,230,280천원(송파 위례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56필지, 104,860㎡)

※ 출처: 2021년 세입사업설명서 중

## 다. 세입예산 종합의견

- 종합적으로 2023년도 재무국의 세입 추계를 살펴보면,
  - 202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6% 증액된 25조 1,195억 1천 3백만원 수준이며,
  - 2022년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 29조 2,651억 5천 7백만원 대비 △14.2%(4조 1,456억 4천 4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최근 5년간(2017~2021회계) 지방세 세입 결산 결과를 보면, 최근 5년 평균 예산액(18조 899억원) 대비 18.0%(3조 2,646억원) 초과 징수되고 있으며, 연평균 9.4%의 세입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 2022년 지방세수입 결산전망액(25조 4,826억원)은 전년(2021년) 지방세 수입 결산액(26조 12억원) 대비 2.0%(5,1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3년도 이후 9년만에 역성장이 전망되는바, 세수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
- 2023년 부동산 취득세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17.9%, 9,918억원) 편성한 것이 재무국의 전통적인 보수적 추계의 답습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입과목으로, 전년 대비 27.3%(5,976억 5천 2백만원)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에도 전환사업비 선공제 등으로 인해 세율 인상만큼 세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바, 세율 인상에 비례하는 세입 확보를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되는 세목이라고 할 것임.
- 지난년도 시세 수입의 체납징수율은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있는바, 체납 징수 확대를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의 시금고 예치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과도한 세입 편성 후 결손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해치고 있는바 재발방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3. 세출예산 검토

- 재무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3조 1,960억 2천 9백만원) 대비 7.0%(2,221억 5천 3백만원) 증액된 3조 4,181억 8천 2만원 수준임.
  -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3조 4,558억 5천 4백만원) 대비 △1.1%(376억 7천 2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5천만원, 순증)과, “지방세불복 대응 비용”(1억원, 순증),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2억 4천 3백만원, 120.6%(1억 3천 3백만원)), “시설 안전관리 및 재산 교환”(234억 3천 3백만원, 125.3%(130억 3천 3백만원)),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9천 6백만원, 542.0%(8천 1백만원)),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3억 9천 6백만원, 35.4%(1억 4백만원)) 등 6개 사업이고,
  - 주요 감액 사업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5억 9천 2백만원, △26.8%(2억 1천 7백만원)),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8천 8백만원, △70.5%(2억 1천 4백만원)),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9억 3천 6백만원, △52.0%(10억 1천 3백만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전감(126억 9천만원)) 등 7개 사업이며,
  - 100억원 이상 사업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등 5개 사업임.

#### 〈 신규사업 현황: 2개 사업, 150백만원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2년도	편성 사유
1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50,000	시·자치구 세무행정의 유기적 일체성과 통일성을 확립하고 세무공무원 상호간 지식 및 정보공유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 증대 기여
2	지방세불복 대응 비용	100,000	지방세입 업무와 관련하여 파급효과가 큰 사안 등에 대해 조세심판 단계에서 납세자 의견이 받아들여진 경우, 과세관청은 더이상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연번	사업명	2022년도	편성 사유
			조세심판 사건의 과세권 유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을 효과적으로 대변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과세권 유지를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 도모

〈 주요 증액사업 현황(20%)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110,057	242,792	132,735	120.6%	퇴직금 수요조사 결과 반영 ('22년 20명 → '23년 31명)
2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교환	10,400,000	23,433,000	13,033,000	125.3%	舊북부지법·지검 매입대금 2회차 분납금
3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15,000	96,300	81,300	542.0%	공시 지원 시스템 구축 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
4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292,700	396,300	103,600	35.4%	세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세 징수목표 달성에 기여한 자치구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1억 원 증액

〈 주요 감액사업 현황(20%)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07,988	591,180	△216,808	△26.83%	사무집기 구매 및 교체 수요 감소 예상
2	계약심사 업무추진	35,250	28,200	△7,050	△20.00%	원가분석자문회의 개최 횟수 감소
3	마을세무사 운영	19,150	12,740	△6,410	△33.47%	5기 마을세무사 명판 제작 비용 감소
4	국고보조금 반환 (세제과)	3,631	-	△3,631	△100.00%	'22년 국고보조금은 전액 집행 예정
5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304,151	89,799	△214,352	△70.48%	편의점 수납, 본인 인증 수수료 등 납부 관련 수수료 전액을 시금고에서 납부 예정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음
6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1,949,637	936,602	△1,013,035	△51.96%	전자고지 마일리지 체도를

						폐지하는 대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 개정 추진 중으로 마일리지 소멸시효(5년) 내에 기존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예산만을 반영함
7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12,690,425	-	△12,690,425	△100.00%	행정안전부 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으로 '23년 예산 미편성

### 〈 100억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비고
				증 감	비율	
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792,041,342	848,791,486	56,750,144	7.2%	
2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교환	10,400,000	23,433,000	13,033,000	125.3%	舊부지법·지검 매입대금 2회차 분납금
3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462,668	16,442,986	980,318	6.3%	원지동 부지 매매계약 합의해제('21.4.5)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4	재정보전금	1,959,074,763	1,993,531,000	34,456,237	1.8%	'23년 세입추계안에 따라 편성
5	시세 징수교부금	640,196,050	513,811,530	△126,384,520	△19.7%	'23년 세입추계안에 따라 편성

#### 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국외업무여비)

- 본 사업은 공통소요 행정물품의 수급관리와 자재창고 운영 등을 통한 조직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기기 구매·교체 수요 감소를 전망하여, 전년 예산(8억 8백만원) 대비 26.9%(2천 1천 7백만원) 감액된 5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당초 최종예산은 같음.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807,988	807,988	591,180	△216,808	△27
사무관리비	35,500	35,500	36,500	1,000	3
공공운영비	56,480	56,480	56,480	0	0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	30,000	20,000	2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0	18,000	18,000	0	0
특정업무경비	70,200	70,200	70,200	0	0
자산및물품취득비	617,808	617,808	380,000	△237,808	△38

○ 다만, 본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를 전년 대비 200%(2천만원)를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한 계획없이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과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례적·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 심화되어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음.

- 한편, 재무국은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국외업무여비(3천 5백만원)’를 편성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액한바 있으며,
- 2022년에는 ‘국외업무여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될 예정인바, 이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침\*에도,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이를 방치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으로써 해당 재원을 필요 사업에 적기 투자할 수 없게 하였는바, 「지방자치법」 제137조2)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준수의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재무국 ‘국외업무여비’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9년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50,000	42,844	7,156	14.3%
2020년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35,000 (20년 제2회 추 경 전액감액)	0	0	0
2021년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35,000 (21년 제2회 추 경 전액감액)	0	0	0
2022년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10,000	0	10,000 (예정)	100
2023년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30,000	-	-	-

2)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나. 인력운영비(통합편성)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직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년 예산(7,920억 4천 1백만원) 대비 7.2%(567억 5천만원) 증액된 8,487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 2023년 인력운영비 예산 편성현황 >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당초	2023년 (안)	증 감	
			증감액	증감률
<b>인력운영비</b>	792,041	848,791	56,750	7.2
보수	529,164	573,041	43,877	8.3
기타직보수	116,849	120,943	4,094	3.5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92,896	92,136	△760	△0.8
직급보조비	19,674	21,075	1,401	7.1
성과상여금	23,457	24,677	1,220	5.2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0,001	16,919	6,918	69.2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목 그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

- 한편, 최근 4년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결산 현황을 보면, 평균 집행잔액은 412억 4백만원(예산액의 5.4%)에 달하고 있고, 이 중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의 평균 집행잔액은 115억 7천 3백만원(집행잔액의 12.8%) 수준으로 발생하여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최근 4년간 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직급 보조비	성과 상여금	
평균 예산액	757,625	523,094	102,316	90,156	19,173	22,885	
평균 집행잔액	41,204	24,788	3,538	11,573	74	1,232	
불용률	5.4	4.7	3.5	12.8	0.4	5.4	
2018	예산현액	710,651	505,485	93,249	69,174	17,842	24,901
	결산액	666,741	477,302	89,413	61,849	17,830	20,347
	집행잔액	43,910	28,183	3,835	<b>7,326</b>	11	4,555
	집행률	94%	94%	96%	89%	100%	82%
2019	예산현액	734,935	513,176	96,210	85,065	19,361	21,121
	결산액	700,259	488,923	95,476	75,433	19,328	21,095
	집행잔액	34,676	24,253	734	<b>9,632</b>	33	26
	집행률	95%	95%	99%	89%	100%	100%
2020	예산현액	783,270	534,658	105,069	101,752	19,728	22,063
	결산액	739,175	509,355	102,445	85,883	19,529	21,963
	집행잔액	44,096	25,304	2,624	<b>15,869</b>	199	100
	집행률	94%	95%	98%	84%	99%	100%
2021	예산현액	801,642	539,058	114,737	104,632	19,761	23,454
	결산액	759,477	517,617	107,778	91,168	19,710	23,204
	보조금반납금	31	29	-	-	-	2
	집행잔액	42,134	21,412	6,959	<b>13,464</b>	<b>51</b>	248
	집행률	95%	96%	94%	87%	100%	99%

- 2022년 결산전망을 보면, 본 사업의 집행잔액은 159억 6천 6백만원(예산액의 2.0%) 수준으로 전망되며,
- 이 중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의 집행잔액 전망액은 82억 1천 7백만원(예산액의 8.9%) 수준으로 전망되어 ‘인건비’ 중 가장 높은 집행잔액과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 2022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결산 전망〉

(단위: 백만 원)

구 분	인원(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전망	집행율	집행잔액
<b>총 계</b>	11,451	792,041	646,012	776,075	98.0%	15,966
보수	7,567	529,164	437,970	527,123	99.6%	2,041
기타직보수	2,081	116,849	91,468	112,207	96.0%	4,642
<b>무기계약근로자보수</b>	<b>1,803</b>	<b>92,520</b>	<b>68,121</b>	<b>84,303</b>	<b>91.1%</b>	<b>8,217</b>
직급보조비	8,332	19,674	19,214	21,054	107.0%	△1,380
성과상여금	6,123	23,833	23,767	23,781	99.8%	52
연금부담금등	1,803	10,001	5,472	7,607	76.1%	2,394

- 2023년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0.8(7억 6천만원) 감액하는데 그치고 있는바,
- 앞서 보았듯이, 2022년 지방세수입 결산전망액이 전년 세입 결산액(26조 12억원) 대비 2.0%(5,1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방세수입의 역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 또 다시 과다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킬 여지는 없는지, 긴급한 예산에 적기 투입하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본 예산과목의 일부 감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 본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시유재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 수령한 매매대금의 반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154억 3천만원) 대비 6.6%(10억 1천 3백만원) 증액된 164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최종예산(154억 6천 3백만원) 대비 6.3%(9억 8천만원) 증액된 수준임.

- 다만, 전년 사업으로 종료된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4천 5백만원, 성동구)을 제외한, 본 사업 보건복지부예의 “매매대금 반환”은 전년 예산 (153억 8천 5백만원) 대비 6.9%(10억 5천 8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기타반환금등	○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15,385,126,297원 = 15,385,127천원	○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15,338,606천원(원금) +1,104,380천원(이자) = 16,442,986천원
	○ 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반환 45,250,827원 = 45,251천원	
	증감사유	
	3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반환함에 따라 반환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	

-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164억 4천 3백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중구 을지로6가)의 서울추모공원 부지(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위해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2016.12.) 후,

〈 시유재산 매각 계약 내역〉

재산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	매각금액 (백만원)	계약 체결일	매수자	비 고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예정부지	서초구 원지동 34-11 외 59필지	전,답 임야	60,002	73,291	'16.12.8	보건복지부	5회 분납('17~'21년) 납부 기일매년 12.1)

- 보건복지부의 요구로 계약이 합의해제(2021.4.5.)됨에 따라 기 납부\*(466억 2천 3백만원)받은 대금 중 용역비로 사용된 6억 7백만원을 제외한 466억 2천 3백만원을 3회에 나누어 2024년 12월 이전까지 분납\*\*하려는 것으로, 2023년에 2회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매각대금 납부(수입) 현황〉

연도별	'16.12월 (계약금)	2017년 (1차)	2018년 (2차)	2019년 (3차)	2020년 (4차)	2022년 (5차)
납부액	52억원	105억원	288억원	21억원 (분납이자)	144억원 (부과유예)	144억원 (미부과)

※ 총 466억원(계약금 52억원, 중도금 393억원, 분납이자 21억원)

〈 \*\*반환금 연차별(3회) 분할 지출 계획〉 (단위 : 원)

연도별	2022년	2023년	2024.12. 이전
분납 원금	15,338,606,000	15,338,606,000	15,338,606,590

□ 추진경위

○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 「서울추모공원 부지(서초구 원지동)로 신축·이전 추진
  - '14.12.04 : 서울시-복지부간 신축·이전 업무협약체결(보건의료정책과)
  - '16.12.08 : 서울시-복지부간 매매계약 체결(자산관리과)
- 「미 공병단 부지(중구 방산동)」로 신축·이전 추진
  - '19.09.08 : 국립중앙의료원'원지동 이전 추진 중단'언론발표
  - '20.07.01 : 서울시-복지부간 신축·이전 업무협약 체결(보건의료정책과)
  - '21.04.05 : 서울시-복지부간 합의각서(MOA)체결(보건의료정책과)

- 다만, 보건복지부와의 매매계약 해제 협의사항 중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징수하는 내용이 배제된데 반해, 본 예산에 편성된 반환금 내역에는 분납 이자 11억 4백만원까지 포함하여 지출하려는 것으로,

(사업설명서 중)

2회차('23년) 반환금 지급 예정액

: 16,565,695천원

(분납 원금 15,338,606천원 + 분납이자 1,104,380천원)

※ 분납 이자율 적용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분납금 납부 시점까지 금리 상승이 예상되어 COFIX 금리를 3.6% 가정하여 계산함

- 본 계약 해제에 있어서 위약금의 미징수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세입결손에 대한 대응이 이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재무국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라.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본 사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을 목적으로, 전년 당초예산(26억 3천 7백만원) 대비 0.2%(6백만원) 증액된 26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최종예산(50억 5백만원) 대비 △47.2%(23억 6천 2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출연금	○ 18년 결산 재산세 도시지역분 미편성분 399,134,000원 = 399,134천원	○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43,438,000원 = 2,643,438천원
	○ 19년 결산 시세 보통세 미편성분 2,237,582,000원 = 2,237,582천원	
	증감사유	
	재산세 도시지역분 미편성분 및 20년 결산 미편성 출연금 등의 2022년 납부로 2023년 법정출연금 편성	

- 전년 최종예산(50억 5백만원)은 2019년 귀속분 출연금에서 감액 의결한 '재산세 도시지역분(3억 9천 9백만원('19 및 '20년 귀속 출연금 중))'과 출연동의안 심사가 보류되어 당시 미편성한 2021년 귀속분\*(22억 3천 8백만원) 합계액 (26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한 2022년 당초 본예산과,

\* 2021년 귀속분 출연동의안 심사 경과

-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4일 상정·심사보류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2일 상정·심사보류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출연동의안 의결(제305회 임시회, 2022.2.21.)에 따라 추가경정예산(23억 6천 9백만원) 증액 편성(제306회 임시회, 2022.4.11.)에 따라 편성되어, 결국 그동안 출연동의안 보류 등으로 지연된 출연금 모두를 출연하게 된 것임.

\* 2022년 귀속분 출연동의안 심사 경과

-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심사보류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2일 상정·심사보류
-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2월 11일 상정·의결(원안기결)

※ '20년과 '21년 귀속분 미출연 금액을 포함한 '22년 최종예산액은 5,005백만원임.

- '22년 본예산 '20년분 미출연액 : 399백만원(도시지역분)
- '22년 본예산 '21년분 미출연액 : 2,238백만원(전액 미출연)
- '22년 추경예산 '22년분 출연액 : 2,369백만원

- 한편, 서울특별시는 지난 12년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11억원의 출연금을 출연(연평균 21억원)하여 가장 많은 부담을 해오고 있으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부담해온 출연금 규모는 1,016억 8천 2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 연도별 출연금 출연 현황 〉

- 서울특별시(본청), 12년간('11~'22) 211억원 출연(연평균 21억원),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국	101,682	3,940	4,597	6,587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8,973	10,423	13,530
서울시	25,086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09	2,631	414	2,424	5,451
시 본청	21,076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2,247	-	2,020	5,005
자치 구	4,010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5	384	414	404	446

- 이렇듯 연구원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으로써, 서울특별시 의회는 출연동의안 심사보류 등을 통해 연구원 운영의 개선을 주문해오고 있는바 살펴보면,
  -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고시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제2조)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제4조제1항)하면서,
  - 출연 근거와 방법,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제4조제3항),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제25조)하고 있음.
- 한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51조).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한국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통해 이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 특별법(「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법인(기타법인)으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심사도 없이 법정 세입액의 일정률로 강제된 출연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 결국 과도한 출연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연구원에서는 목적사업과 무관한 청사를 매입(176억원)하고,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자로서 당연한 법적 (「지방출자출연법」) 권리인 출연금 규모·용도에 대한 심사는 물론이고 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 수단의 기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원” 명칭을 쓰고 있는 절대 다수의 출연금 지급 대상 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재단 법인으로써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 그러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우는 재단법인이 아닌, 이례적으로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었고 이러한 변칙적 연구원 설립 효과로,
    -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지도·감독권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고,
    - 이로 인해 연구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대부분을 행정안전부 고위 관료 출신자로 구성하고 있으며,
    - 연구원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는 출연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행정안전부 출연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등 비상식적인 출연기관 운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연구원의 이례적 연구원 설립 형태는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무임승차 하고자 하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 오기에 충분한 배경 사실이라고 할 것임.
- 한편,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구원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으로, 한국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출자출연법 상의 재단법인화를 통한 정상화 방안 마련, ②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면서도 연구원 출연 재원에도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이중지출 문제 개선, ③출연금 산출방법을 예산규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으로의 개선, ④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원을 지도·

감독하는 방안, ⑤지방세 제도발전을 위해 출연금 일부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을 주문한바 있음.

- 이 개선 요구사항 중 연구원의 재단법인화를 통한 정상화를 요구한 것은, 연구원 설립 형태를 현행 “특수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임에도,
- 재무국의 답변자료를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음.

\* 특수법인인 상태로 지방출자출연법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법 조문에 의해 쉽게 인지할 수 있음.

〈 지방세연구원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경과(2021.11.) 〉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 기금 용도 중 “출연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시행령은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여부 검토	○ <b>법률자문결과: 합헌</b> (자문변호사 3명 같은의견)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함을 형식적 법률로 명시 (합헌) - 시행령에서 기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금의 우선사용 규정역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합헌)
○ 출자출연법 적용을 위한 법인격의 재단법인화	○ <b>지방세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아님</b> - 지자체가 설립하고,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이어야 함 (법률자문회신 2018-0903, 법률지원과 2018.11.16)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이중지출 문제를 개선	○ 행정안전부에 <b>지속적인 건의 및 면담</b> 을 하고 있음 - ‘21.9.30 행안부 전화면담, ’21.11.4. 개정건의·면담 ※ 행안부 의견 : 모든 지자체 협의시 신중검토
○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출연금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추진 ○ 연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지방	○ 추진현황 - 지방세연구원의 자율적 개선 방안 강구 요청(’21.9.13) - 서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의 활용 및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 의뢰(’21.9.16.) · 연구기간 : 2021.10월~2022.2월 (5개월) ○ 향후추진계획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출연 문제 등 지방세 관계법의 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개정 요청

<p>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의 일정부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연구원의 자율 개선방안 수립시 개선 사항 검토 및 시행 사항 관리</li> <li>-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관리 개선 추진 및 시의회에 설명</li> </ul>
--	--

- 따라서, 출연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연구원에게 주는 출연금의 산정이나 지도·감독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이사회 의 결의를 거치든, 법률 자문을 거치든, 현행 특수법인을 일반적인 출연기관 법인 형태인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연구원이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출연자로서 서울특별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무국의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됨.

○ 다만, 지난 수년간의 연구원의 출연기관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개선건의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안전부)의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근거하여 새로 마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신설)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통해 쟁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한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

<p><b>*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b>          - 법률 제18297호, <u>2021.7.13. 제정</u>, 2022.1.13. 시행 -</p> <p>◇ 제정이유</p>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

◇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 마. 지방세불복 대응 비용

○ 본 사업은 지방세 구제 제도 중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관청을 기속\*하여 이를 더 이상 다룰수 없게 되는바,

\* 「국세기본법」 제80조제2항(결정의 효력)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 준용)

- 지방세 구제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납세자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1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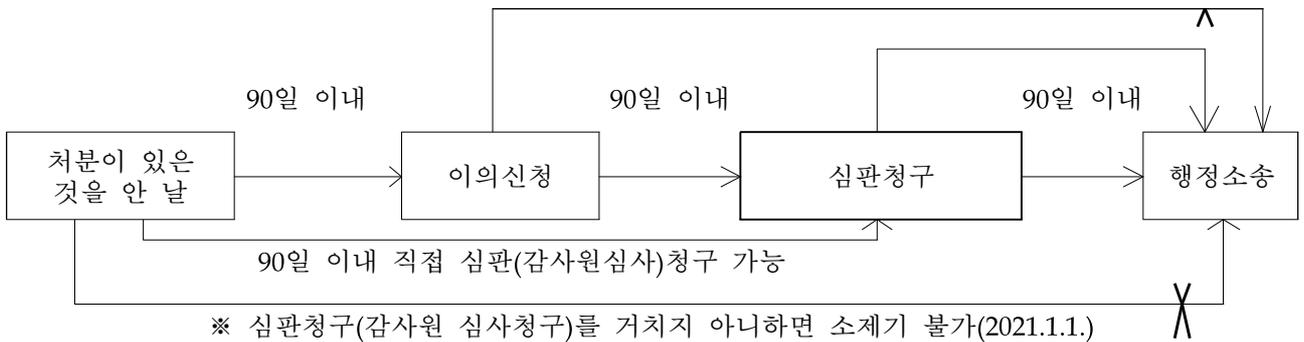
\* 「지방세기본법」 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조세심판 불복 대리인(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극적 과세권 유지 도모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조세심판 단계에서 과세관청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및 과세권 유지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확보 도모	

〈 지방세 구제절차 흐름도 〉



- 한편, 최근 5년간 지방세 구제제도에 따른 불복 현황은 3,518건(1조 9,446억원)으로 신청이 인용(일부인용 포함)된 현황은 833건(23.7%, 2,945억원\*) 수준이며,

\* 금액기준 15.3%

- 이 중 조세심판원에서의 심판청구 현황은 1,843건(9,581억원)으로 청구가 인용(일부인용 포함)된 현황은 529건(34.2%, 1,522억원\*) 수준임.

\* 금액기준 30.9%

○ 따라서 통계적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률이 전체 구제절차에 따른 평균 인용률보다 높게(전수 7.2%, 금액 15.6%) 나타나는데, 조세심판원 심사청구에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지방세 구제제도 별 결과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연도별	제기건		결과(인용/기각·각하/기타)				비고 (인용률)
				채택/일부채택/인용		불채택/심사하지 않음/기각/각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과세전 적부심	합계	591	339,574	162	24,911	429	314,663	27.41%
	2022.9	147	87,246	13	2,022	134	85,224	8.80%
	2021	140	91,093	29	3,137	111	87,956	20.70%
	2020	118	38,350	35	13,005	83	25,345	29.7%
	2019	101	99,429	54	3,491	47	95,938	53.5%
	2018	85	23,456	31	3,256	54	20,200	36.5%
이의 신청	합계	818	529,747	128	112,804	690	416,943	15.92%
	2022.9	125	112,630	26	11,467	99	101,163	20.8%
	2021	144	103,036	19	23,701	125	79,335	13.2%
	2020	180	216,555	33	68,770	147	147,785	18.3%
	2019	198	75,679	24	3,549	174	72,130	12.1%
	2018	171	21,847	26	5,317	145	16,530	15.2%
심사 청구	합계	65	4,943	13	4,168	52	775	21.35%
	2022.9	-	-	-	-	-	-	-
	2021	4	1,087	1	847	3	240	25.0%
	2020	12	388	4	206	8	182	33.3%
	2019	36	3,424	7	3,111	29	313	19.4%
	2018	13	44	1	4	12	40	7.7%
심판 청구	합계	1,843	958,131	529	152,173	1,020	296,425	34.2%
	2022.9	215	221,667	5	682	115	51,024	4.1%
	2021	377	202,026	45	32,993	113	19,062	28.4%
	2020	742	254,350	233	41,239	407	109,961	36.4%
	2019	237	164,904	108	27,513	156	77,146	40.9%
	2018	272	115,184	138	49,746	229	39,232	37.6%
감사원 심사청구	합계	201	91,840	1	401	42	13,978	0.5%
	2022.9	26	15,560	-	-	-	-	0.0%
	2021	58	18,387	-	-	1	5	0.0%
	2020	90	52,549	-	-	20	13,564	0.0%
	2019	23	5,195	1	401	18	272	4.3%
	2018	4	149	-	-	3	124	0.0%

※ 출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36쪽

- 다만,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에서는 해당 사건의 조사·분석·감사 담당자(또는 소송 전담자) 등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 해당 불복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을 직접 소송수행자로

참여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으로, 대리인을 통한 불복 사건 대응은 그 사건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기준 수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바.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 본 사업은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한 고지서 송달 비용 등 징세비용의 절감액에 대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실비보상 취지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19억 5천만원) 대비 △51.9%(10억 1천 3백만원) 감액된 9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기타보상금	○ 마일리지 지급 등 = 1,949,637천원 - 마일리지 지급 4,174,630건 * 350원 * 96.6% = 1,411,443천원 - 마일리지 지급(30만원 이상) 1,023,776건 * 500원 * 96.6% = 494,484천원 - 마일리지 지급(자동이체 대상) 198,134건 * 150원 * 96.6% = 28,710천원 - 모범납세자 과세증명 수수료 면제 보전 15,000,000원 = 15,000천원	○ 마일리지 지급 등 = 936,602천원 - 마일리지 지급 3,870,115건 * 350원 * 48.6% = 658,307천원 - 마일리지 지급(30만원 이상) 1,034,513건 * 500원 * 48.6% = 251,387천원 - 마일리지 지급(자동이체 대상) 266,220건 * 150원 * 48.6% = 19,408천원 - 모범납세자 과세증명 수수료 면제 보전 7,500,000원 = 7,500천원
	증감사유	
	○ 증감 사유 1. 전자고지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3.1.1. 시행목표) 및 마일리지 지급 대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22.12.30. 시행목표)을 추진 중이나 <b>마일리지 소멸시효(5년) 내 기존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23년 예산 편성 필요</b> 2. '22년 미지급 될 마일리지 예상분('21년 마일리지 미정산분(886,363천원))을 고려하여 아래 당초 산출금액의 50%를 예산 반영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 당초 산출금액 1. 마일리지 홍보, 전자고지 이용 매체 및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건수 증가 2. 2021년도 실적립 건수의 증가량(122%)에 따른 2022년도 적립 건수 예상 후 2023년도 적립 예상 건수에 대한 예산 책정 * 2021년, 2022년도의 예상한 지원 건수보다 실제 건수가 감소하여 2023년의 예산이 감소됨	

○ 한편, 본 예산안 심사 회기(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 지방세 정기분 세목\*을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받거나, 고지 세액을 ‘자동이체(신용카드, 계좌)’ 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액의 규모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상한액에 일치시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 정기분 세목(시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 이 개정 조례안 시행(2023.1.1.)과 동시에 본 사업의 마일리지 적립을 폐지\*하되, 이미 발생한 마일리지에 대하여 소멸시효(5년) 내에 있는 마일리지가 소멸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납세자의 지급 신청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전자송달 등 납세자에게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두 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이를 세액공제로 일원화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기존 마일리지 미사용 납세자에 대한 사용 홍보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그동안의 마일리지 운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7년부터 2021년까지)간 소멸시효 완성이로 소멸된 마일리지가 3억원에 이르고 있고,

**<최근 5년간 마일리지 시효소멸 현황>**

년도별	건수	명수	적립액(천원)	1인 평균 적립액(원)	소멸액(천원)
계	8,259,459	3,103,501	4,185,613	1,349	294,167
2021년	2,588,590	982,496	1,243,549	1,265	73,078
2020년	2,117,059	807,542	1,004,605	1,244	71,282
2019년	1,507,615	569,163	716,558	1,258	65,917
2018년	1,120,569	406,746	670,452	1,648	53,497
2017년	925,626	337,554	550,449	1,631	30,393

※ 출처: 전자고지·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계획(세무과-28074, 2022.7.28.)

※소멸분 처리 방법

- 소멸예정 마일리지 상시 안내(ETAX, STAX, 이메일 고지서)
- 유효기간(5년)이 경과하는 연도 12월 31일 자동소멸
- 소멸된 마일리지는 익년 1월 초 세외수입(기타잡수입)으로 세입처리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⑥ 제3항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현재까지의 미지급된 누적 마일리지 또한 27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마일리지 제도의 폐지를 앞둔 현 시점에 미지급 마일리지의 적극적 환원을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마일리지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적립액	사용액	미사용액	소멸시기
합계	5,508,684	2,796,819	2,711,865	-
2017	550,449	454,750	95,699	2023년
2018	670,452	530,021	140,431	2024년
2019	716,557	488,984	227,572	2025년
2020	1,004,605	568,736	435,868	2026년
2021	1,243,549	539,517	704,032	2027년
2022.10	1,323,073	214,811	1,108,262	2028년

## 사.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세의 자치구 위임 징수에 따라 자치구 세무공무원과의 상호간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합동 연찬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순증하여 편성하려는 것임.

### 〈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세무공무원 직무 연찬회 50,000,000원 = 5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시,자치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유기적 일체성과 통일성을 확립하고 세무공무원 상호 간 지식 및 정보공유를 통해 안정적 세입증대 기여	

- 한편, 재무국의 지방세 관련 3개 부서(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에서는 각 과별로 워크숍\* 등 예산을 편성해오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부터 해당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 편성한바 있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워크숍 등 행사성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 세무부서 3과 워크숍 현황 〉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구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세제과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요구액	12,000	1,200	10,000	10,000	10,000	10,000
		예산(안)	1,200	1,200	1,200	10,000	10,000	10,000
		최종예산	-	1,200	1,200	-	10,000	10,000
		집행액	-	-	-	-	10,000	10,000
		집행률	-	0%	0%	-	100%	100%
세무과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요구액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예산(안)	50,000	-	-	30,000	30,000	30,000
		최종예산	-	-	-	10,000	30,000	30,000
		집행액	-	-	-	-	29,818	30,000
		집행률				0%	99%	100%

38세금 징수과	체납징수 기법 공유 시 -구 합동 워크숍	요구액	20,000	11,000	11,000	11,000	13,200	13,200
		예산(안)	-	-	-	11,000	11,000	13,200
		최종예산	-	-	-	-	11,000	13,200
		집행액	-	-	-	-	11,000	13,200
		집행률	-	-	-	-	100%	100%

- 다만, 본 사업에서는 해당 행사경비를 위한 예산을 종전 편성액(3천만원) 대비 66.7%(2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폭 축소된 이 외의 행사를 대신하여 본 사업을 통해 자치구 세무공무원과의 워크숍을 한 번만 개최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울특별시세 9개 세목\* 중 7개의 세목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바, 본 사업을 통한 자치구 세무공무원과의 지식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한 협업 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연 1회의 최소한의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특별시분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별도)
- 다만, 1회성 행사성 사업비로 다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세무부서 각 과별로 유사한 목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행사성 사업의 통합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아. 시세 징수교부금

-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경비로,

- \*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시세징수교부금은 교부대상 세목: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7)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 전년 당초예산(4,751억 4천 3백만원) 대비 8.1%(386억 6천 8백만원) 증액된 5,138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최종예산(6,401억 9천 6백만원) 대비 △19.7%(1,263억 8천 5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서울특별시 세입 지방세의 25개 자치구 위임징수 규모

- 2021회계연도 결산

- 서울특별시 지방세 세입: 26조 12억원
- 이 중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 징수액: 22조 4천 7백억원  
(서울시 지방세수입의 86.4%)
- 이 중 징수교부금 교부 대상 지방세 징수액 : 19조 810억원  
(서울시 지방세수입의 73.4%)

○ 2022년 9월말 현재 자치구에 교부된 징수교부금 규모는 5,887억원 수준으로 이미 당초예산(4,751억원)을 넘어서, 2021년 징수실적 정산에 따른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6,402억원(증 1,651억원)의 92.0%에 달하고 있음.

〈본 사업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기정(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	증 감	비 율
시세 징수교부금	475,143	640,196	165,053	34.7%
징수교부금	475,143	640,196	165,053	34.7%

※ 매월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징수교부금 교부대상 징수액에 대하여 징수월의 다음달 말일에 징수교부금을 자치구에 교부, 정산에 따른 추가분은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교부 정산

〈 최근 5년간 자치구 위임징수로 인한 징수교부금 교부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말 현재
계	410,933,902	438,818,877	468,125,760	510,458,159	588,721,154
종로	15,847,231	16,874,118	16,871,402	19,159,627	22,298,747
중구	23,914,925	27,070,165	26,239,526	28,123,347	33,806,455
용산	13,349,689	13,820,814	15,997,213	19,779,214	22,506,998
성동	12,825,774	13,072,298	14,998,380	17,520,201	19,892,615
광진	10,876,412	11,021,393	11,700,476	12,052,737	14,800,815
동대문	10,765,673	11,321,863	11,680,274	12,182,392	14,021,797

중랑	9,318,549	9,997,543	10,894,613	11,223,364	12,976,678
성북	11,859,128	12,579,126	13,254,322	13,899,329	15,649,069
강북	6,939,545	7,432,938	7,866,443	8,023,018	9,260,096
도봉	7,722,959	8,261,613	8,762,830	9,119,007	10,165,441
노원	12,060,756	12,563,553	13,947,543	13,973,030	15,631,695
은평	11,591,665	12,147,085	13,240,690	13,647,102	15,359,871
서대문	9,048,284	9,834,744	10,743,685	11,031,467	12,525,951
마포	16,999,319	18,184,338	19,479,624	20,918,135	24,376,285
양천	13,093,566	14,031,422	15,378,841	15,742,886	17,291,151
강서	20,175,598	21,472,284	23,154,922	25,466,053	28,395,757
구로	14,190,655	14,846,937	16,161,546	17,510,216	20,112,568
금천	11,075,202	11,853,321	12,524,939	13,758,888	15,733,191
영등포	25,242,409	27,000,712	29,944,797	33,931,304	38,708,569
동작	10,903,351	11,558,385	12,322,943	13,900,246	15,102,169
관악	11,638,421	11,953,464	12,838,431	12,902,296	14,442,262
서초	33,798,972	35,702,023	36,408,527	42,300,113	48,777,999
강남	55,869,418	58,048,066	60,498,398	68,284,215	85,908,239
송파	28,529,414	32,354,406	32,960,421	37,426,290	41,583,254
강동	13,296,987	15,816,266	20,254,974	18,583,682	19,393,482

※출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8쪽

-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 (2017.12.)’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행 징수교부금 교부율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분석 내용」

- 자치구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분석된 자치구는 중랑구로 2.25%의 값을 보임. 다음으로는 도봉구 2.13%, 강북구 1.92%, 양천구 1.86%, 관악구 1.79%, 은평구 1.70%의 순을 보여,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0.29%에 불

과함.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중구 0.38%, 영등포구 0.43%, 서초구 0.45%, 종로구 0.50%, 송파구 0.58%, 용산구 0.78%로 대체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세목별로 보면, 소유분 자동차세가 2.8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세가 2.86%로, 이 두 세목은 현재의 3%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취득세 0.72%, 지역자원시설세 1.05%, 지방소득세 0.52%, 도시지역분 재산세 0.31%로 현재의 3%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여전히 같은 교부율(3%)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3%)의 인하 또는 (가칭)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을 통하여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 등 서울특별시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 마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세 징수교부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8월 말
예산액 (현액)	419,907	424,431	468,126	510,458	640,196
집행액	419,907	424,431	468,126	510,458	588,821
집행률	100%	100%	100%	100%	92.0%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